

##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1년 8월 9일
- 회부일자 : 2001년 8월 10일

3. 제안이유

- 관계법령의 개폐 및 다른 위원회의 통·폐합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일부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위원회의 기능 재조정
  - 증복 및 폐지된 규정 삭제
    - 이의신청 심의
    -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 각종 가격 및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
    -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 신규사항 추가

- 보안심사

- 정보공개 심의사항

- 일부 불합리한 자구수정

- “실·과장” ⇒ “과장”

- “국유재산의 대부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심의”로 함.

## 5. 검토의견

-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관련법규의 개정과 중복 또는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조직개편 등으로 일부 불 부합한 조항 “실·과장”을 “과장”으로, “국유재산의 대부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심의”로 개정하는 등 자구를 수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재조명하여 중복 폐지된 이의신청 심의, 농지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각종 가격과 요금조정에 관한사항,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등을 삭제하고,

신규항목으로 보안심사, 정보공개 심의사항을 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목적과 중요부분이 대부분 개정되어 전면 개정함이 타당하나 부분개정으로 처리한 사유와 동 조례 제2조 중 단서조항은 현실적으로 대행하는 위원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서조항을 삽입한 사유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